

의안번호	2207036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5.1.22.
추계번호	24D6340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)	·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뿐만이 아닌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위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여성지방의회의원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(안 제182조제1항)

- 개정안은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·도의회 여성위원과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위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성의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사무실 임차료, 인건비·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－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·도지사협의체, 시·도의회 의장협의체, 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체 및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,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

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원협의체 사무국의 조직 및 인원 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
- 다만, 여성의원협의체 사무국의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소재지와 임대 면적, 사무국의 조직규모 및 직원의 보수,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,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 설립·운영 중인 4개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2025년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4개 지방자치단체협의체 예산 현황: (2025년)

(단위: 백만원)

협의체명	예산액
대한민국시·도지사협의회	58,121
대한민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	18,104
대한민국시·도의회의장협의회	2,643
대한민국시·군·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	2,553

자료: 행정안전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